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년 12월 17일
-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17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2002년 1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과대 동(상무1동, 금호풍암동) 분동과 관련 14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 동 기능전환 업무의 정착과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연장승인 통보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분동정원으로 승인된 14명을 반영(안 제2조)
 - 정원의 총수를 591명에서 605명으로 하고
 -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명에서 585명으로 함
- 조례 제576호 부칙(2000.12.30) 및 제609호 부칙(2001.07.31)의 제2조 중 “22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4년 6월 30일”로 함
- 이 조례의 시행은 2003년 1월 1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인구 과대 동인 상무1동 및 금호풍암동 분동과 관련 정원승인과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각각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임.

안 제2조에 대한 의견임.

안 제2조는 인구 과대 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무1동을 상무1동과 치평동으로, 금호풍암동을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분리 신설함으로써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1명(집행기관 : 571명)에서 605명(집행기관 : 585명)으로 14명을 증원하자는 안임.

상무1동과 금호풍암동의 인구수는 10월말 현재 각각 51,207명과 84,939명이고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서구 공무원 정원은 각각 15명과 18명이며,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정원은 각각 5명과 9명임.

문제는 증원인원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겠음.

행정자치부는 동을 표준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주거·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인구수를 고려한 동별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음. 이번에 증원된 14명의 정원인력은 분동대상 동의 현·정원을 기준으로 동기능 전환 지침상의 인력배치 기준과 대비하여 부족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판단됨.

인력배치 기준

(단위 : 명)

동 별		인 구 (10월말)	유형별	인력배치 기 준	정원	승인 정원
상무1동		51,207	표준지역	11 ~ 13	15	5
분동 (신설)	상무1동	18,374	표준지역	7 ~ 9		
	치평동	32,833	주거지역	10 ~ 12		
금호풍암동		84,939	주거상업지역	15 ~ 17	18	9
분동 (신설)	금호동	51,235	표준지역	11 ~ 13		
	풍암동	33,704	표준지역	9 ~ 11		

조례 제576호 부칙 제2조와 조례 제609호 부칙 제2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은 동 기능 전환업무의 정착과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각각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

이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정원의 연장 승인통보에 의거 미리 그 한시정원의 연장이 승인된 사항이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의 보강 운영을 위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한시정원의 연장의 타당성은 있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91명”을 “60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571명”을 “585명”으로 한다.

조례 제576호 부칙 제2조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하며

조례 제609호 부칙 제2조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p> <p>[조례 제576호 부칙(2000.12.30)]</p> <p>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확보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한다.</p> <p>[조례 제609호 부칙(2001.7.31)]</p>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광주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일반행정직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 -----605명-----</p> <p>1. ----- : 585명</p> <p>2. (현행과 같음)</p> <p>[조례 제576호 부칙(2000.12.30)]</p> <p>제2조(한시정원) ----- ----- 2004년 6월 30일----- -----.</p> <p>[조례 제609호 부칙(2001.7.31)]</p> <p>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 ----- ----- ----- 2004년 6월 30일----- ---</p>